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9.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9호로 2019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사업, 공익사업의 경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를 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선납 원칙으로 변경하여 체납 발생을 줄이고, 복구비용 산출항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적용 요율을 변경하여 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는 후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나.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산출 방식 변경(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4)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2019. 8.22. ~ 2019. 9.1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공사업, 공익사업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고 복구비용 산출항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적용 요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 외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을 선납으로 규정하였고

- 안 별표 1에서는 도로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에 대한 산출방식을 변경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후납 부과 허용으로 인해 수시 체납이 발생되어 체납 발생을 예방을 위하여 선납 부과 원칙으로 개정하고,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⑥ (생략)